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-2호

Apr. 2024

보험 정책 동향

- 금융감독원,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「화해계약」 체결 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(4.5.) -

1. 개 요

- **금융감독원**은 금년 2월부터 **보험협회, 보험회사**와 **공동 TF를 구성·운영**하고 **의견 수렴 절차** 등을 거쳐 **소비자 보호 관점**에서 실효성 있는 **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**

2. 주요 내용

[1] 화해계약 대상선정시 내부통제 강화 (대상선정 단계)

- ①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**보험금 지급요건**이 **명확**하게 **확보**되지 **못해** ②적정 보험금 관련 **분쟁**이 **지속**되는 경우로서, ③보험회사의 **내부통제기준** 등에 따라 **화해계약 체결**이 **불가피**하다고 **결정**된 **경우**에 한하여 화해계약 체결

  * 약관상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별도의 합의 문서 없이 일상적인 보험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

[2] 설명의무 마련 (계약체결 단계)

① **(화해계약 여부 명시)** 소비자가 **화해계약**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'**화해**'의 **의미**가 드러나는 **제목**을 **사용**

② **(설명의무 이행)** 소비자가 **화해계약 효력**을 충분히 **인식**할 수 있도록 민법상 **화해**의 **정의**, 화해계약 **효력, 분쟁 및 화해내용**, 화해계약 **이행기한**에 대한 **설명**을 **의무화**

③ **(직접 설명 여부 확인) 보험회사**가 화해계약 **주요 내용**을 **계약서**에 **기재**하여 **설명**하고, **소비자**가 **충분히 설명받았음**을 **자필서명**을 통하여 **확인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[3] 준수사항 명시 (계약체결 단계)

① **(화해계약서 충실화)** 불필요한 **법률적 다툼**을 **방지**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**①양 당사자, ②분쟁 대상인 보험계약, ③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, ④화해 내용** 등 화해계약의 **기본 요건**을 **필수 기재사항**으로 **명시**

화해계약서 항목별 세부 포함 필요사항

계약서 항목	세부 포함 필요사항
① 양 당사자	보험금 청구권자(계약자, 피보험자 등), 보험회사
② 분쟁 대상 보험계약	보험상품명, 계약일자, 계약자피보험자 등
③ 분쟁 내용	보험금 청구권자 주장내용 : 분쟁발생일, 근거 등 보험회사 주장내용 : 약관내용, 근거 등
④ 화해 내용	양보하는 내용(금액 등) 구체적으로 명시

② **(부당한 문언 포함 금지)** 화해계약 이후 **새로운 보험금 청구**를 **봉쇄**하지 **않도록** 부제소 합의,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* 등 소비자의 **법적 권리**가 **침해**될 수 있는 **문구 사용**을 **금지**

* 화해내용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약관상 부지급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

- **소비자**가 **직접** 계약서에 **부당한 문언 포함 여부를 확인**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상기 **문구**를 **예시**로 **열거**

③ **(이행기한 명시)**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**보험금**을 **늑장 지급**하지 **않도록**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**보험금 지급채무**에 대하여 그 **이행기한**을 **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***로 명시

*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(상법 §658)

[4]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(사후관리 단계)

① **(적정성 검토) 체결대상**의 **적정성, 설명의무** 이행 여부, **불합리한 문언** 포함 **여부** 등에 대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**적정성 검토**

② **(사후점검) 준법감시인** 또는 **감사부서**가 **화해계약** 체결의 **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**를 **점검** 또는 **감사**(연중 1회 이상)

③ **(통계집적)** 분쟁내용, 화해계약 결과, 적정성 검토여부, 민원 여부 등에 대한 **데이터 관리**를 통하여 **민원 예방**을 위하여 **노력**

3. 향후 계획

- 개정 가이드라인은 **보험회사**의 **내규** 및 **시스템** 등에 **반영**하여 **적용**할 예정이며, 내규 반영 전이라도 **화해계약서 양식** 등 **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**은 **4월부터 즉시 시행**할 예정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Id=135188&menuNo=200218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